

예 산 총 칙

2019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36,532,544	28,095,976
일반회계		865,996,700	25,979,901
특별회계		70,535,844	2,116,075
	공기업특별회계	56,325,235	1,689,757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8,036,994	541,110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8,288,241	1,148,647
	기타특별회계	14,210,609	426,318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6,408,045	192,241
	의료보호특별회계	2,856,698	85,701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759,028	22,771
	수질개선특별회계	607,506	18,225
	주택사업특별회계	536,599	16,098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특별회계	3,042,733	91,282

제 2 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세출예산 " 과 같다.

제 3 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는 "17,830,904" 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 기준인건비 " 에 포함된 경비,재무활동경비,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